

위탁판매 데이터방송 조건 협약서

주식회사 [CJ 홈쇼핑상호](이하 "CJ"라 한다)과 [협력사상호](이하 "협력사"라 한다)은(는) 양 당사자간에 체결한 위탁판매 기본계약서 (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부속하여 "CJ"가 운영하는 데이터 방송 서비스를 통한 위탁판매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한다.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계약에 따른다.

제 1 조 [협력사 정보]

협력사명		협력사코드		판매매체	
------	--	-------	--	------	--

제 2 조 [방송 시간]

방송일시	[방송시작시간] ~[방송종료시간]	프로그램명	[방송명]
------	--------------------	-------	-------

제 3 조 [판매 조건]

번호	판매코드	판매상품명	판매가(원)	매입방법	배송주체	정액수수료(만원)	정률수수료(%)	임의반품기간
[[ITEM_LIST]]								

<정률수수료는 VAT 포함, 정액수수료는 VAT 별도임>

- 추가 규정 : CJ는 상기 판매위탁수량 중 잔여 재고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① 본 협약서에서 수수료는 협력사가 CJ에게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의미한다.
- ② 방송제작비는 "CJ"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섭외하거나 제작한 게스트 또는 상품설명자료(VCR, 손판넬 등)등을 방송에 사용할 것을 "CJ"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방송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CJ"는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협력사"로부터 해당 상품의 샘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본 항에 따라 샘플을 수령한 경우 샘플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소모성 상품의 경우에는 "CJ"가 "협력사"로부터 해당 상품을 판매가로 구매하여야 한다. 만약, 판매가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 예정가 또는 동종 유사상품의 판매가격을 판매가로 한다.
-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 목적 및 방송 프로그램 시연 목적으로 "CJ"의 요청시 "협력사"는 이에 필요한 판매상품의 샘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 [프로모션]

번호	유형	상품코드	상품명	분담 내역 및 비율

- ① 양 당사자는 본 조에 따른 프로모션은 상품 판매 시 마다 적용되는 조건으로서 예상비용 및 이익을 산정할 수 없음에 동의하며 다만, 그 분담비율은 "CJ"와 "협력사"에게 예상되는 경제상 이익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본 조에 따른 "협력사"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사"의 비용부담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초과분은 "CJ"가 부담한다.

- ③ 본 조 2 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경우에는 본 조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본 조의 프로모션은 매출증대를 위해 "CJ"와 "협력사"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분담내역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CJ"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내용이다.
- ⑤ ARS 할인 프로모션은 TV 방송에 적용되며, eTV 등에서 판매시에는 ARS 할인 프로모션 조건을 할인쿠폰이나 즉시할인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 ⑥ 본 조의 프로모션은 방송시간 포함하여 방송시간 외에도 운영하며, 합리적인 사유 발생 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 조 [협력사의 전문 보조인력 사용]

- ① 게스트 모델 방청객 기타 보조인력 등 방송 제작과 관련한 보조인력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CJ"의 인력으로 운영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CJ"가 전액 부담한다.
- ② 본 조 1 항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협력사" 상품의 판매 증진을 위해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전문 보조인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 보조인력 수, 업무내용, 분담 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약정하여야 한다

번호	유형		인력(명)	업무내용	CJ(%)	협력사(%)	비고
1	게스트	연예인		방송에서 특수 판매기법등 전문적인 상품 설명		[협력사분담]	
		판매전문가					
		협력사대표					
		협력사직원					
2	기타 전문보조인력			전문적인 상품관리업무		[보조협력사 분담]	

- ③ "협력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보조인력이 본 조 2 항의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CJ"는 "협력사"가 보조인력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용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요청한 서면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조에 따른 파견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협력사" 보조인력의 근무기간 및 시간은 제 2 조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6 조 [심의 준수]

양 당사자는 방송법에 따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체결하는 심의규정 준수협약서에 따른다.

제 7 조 [특약 사항]

“CJ”와 “협력사”는 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 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음에 동의한다. 단, 본 협약서의 각 조건이 상호 합의한 사항과 다른 경우 “협력사”는 본 협약을 반러하고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에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XX 년 XX 월 XX 일

“CJ”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대표이사 윤 상 현 (인)

“협력사”

(인)